



산업통상자원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연장에 따른 지침 안내 및 협조요청

1. 귀 기관의 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(1.2)를 통해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.5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아래와 같이 조정 및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* 금번에 새롭게 조정되어 시행되는 방역 조치사항(아래 밀줄 및 볼드체 사항)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이 불가하며, 강화된 조치만을 시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적용 기간 : 2021년 1.4(0시) ~ 2021년 1.17(24시)까지
- 대상 지역 :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)

< 주요 지침 >

①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

- 대상 시설 : 클럽 · 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홀덤펍,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, 파티룸

- 조치 내용 : 집합금지

붙임 1.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

- 대상 시설 : 학원, 교습소, 문화센터 등

- 조치 내용 :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 2.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② 식당 ·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

- 대상 시설 : 식당 · 카페
-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 3. 수도권 식당 ·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③ 실내체육시설

- 대상 시설 : 실내체육시설
- 조치 내용
 - (기존) 집합금지
 - (조정) 원칙적으로 집합금지
 - * 다만, 체육시설법상 체육도장업(태권도 등)의 경우 아동 · 학생(고등학교 3학년생까지)에 대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까지 운영을 허용함

붙임 11. 수도권 식당 ·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④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

- 대상 시설 : 실외 겨울스포츠시설, 백화점 · 대형마트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목욕장업, 영화관, 공연장, PC방, 오락실 · 멀티방 등, 독서실 · 스터디카페, 놀이공원 · 워터파크, 이 · 미용업, 백화점 · 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(300m² 이상)

-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 4.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⑤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

- 대상 시설 : 수도권 지역 숙박시설
 - 리조트, 호텔, 게스트하우스, 농어촌민박 등

-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 5.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⑥ 모임 · 행사

- 조치 내용 :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, 그 외 모임 · 행사 50인 이상 금지

-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-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(예: 교실)내 50인 미만이면 허용
 - * 전시회 · 박람회 ·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50인 기준 미적용

붙임 6. 수도권 모임 ·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⑦ 고위험사업장

- 대상 시설 :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
- 조치 내용 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 8.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⑤ 직장근무

- 기관별 · 부서별 전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
 - *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
 -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
 - 밀폐 · 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)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 수칙 의무화
- 민간 기관은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,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
 - *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
 - ** 민간기업 · 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 · 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

⑥ 그 외

- 종교시설
 - 방역지침 의무화
- 교통시설 : 대중교통 시설(국제항공편 제외)
 - 방역지침 의무화
 - KTX · 고속버스 등 50%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(항공기 제외)

- 국공립시설
 - 소관 부처·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
 - 경륜·경정·경마장·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,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%로 제한 원칙
 - * 부처·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, 방역 관리상황,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
- 아파트 내 편의시설
 - 아파트·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, 카페, 독서실,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 편의시설 운영 중단
- 주민센터
 - 문화·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
- 사회복지 이용시설
 - 이용인원 30% 이하로 제한(최대 50명)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
 -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
 - 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
- 스포츠관람
 - 무관중 경기

3. 각 협단체에서는 동 자료(붙임)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, 이메일, SNS 등을 통하여 신속히 소속 기업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또한,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,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.
2.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.
 3.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.
 4.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.
 5.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.
 6.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.
 7.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.
 8.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.
 9.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.

10. 사적 모임 금지 관련 FAQ.
11.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
12. 수도권 일반관리시설(직업훈련기관)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.



수신자 한국산업단지공단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중소기업중앙회, 전국경제인연합회, 대한상공회의소, 한국경영자총협회, 한국무역협회, 중견기업연합회, 업종별 협·단체

주무관 박혜수 과장 나성화
전결 2021.1.4.

협조자

시행 산업일자리혁신과-6 (2021. 1. 4.) 접수

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, (어진동) / <http://www.motie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4222 팩스번호 044-203-4722 / oyeah5@motie.go.kr / 대국민 공개